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915	오세희의원	2024.7.18.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2024. 9.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2		2202253	김정호의원	2024.7.25.	
3		2202927	송재봉의원	2024.8.19.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20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4		2204734	이재관의원	2024.10.1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11.19.)
5		2205150	오세희의원	2024.10.31.	제422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 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6		2208203	송재봉의원	2025.2.17.	제429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회부
7		2208689	김한규의원	2025.3.6.	
8		2209106	오세희의원	2025.3.19.	
9		2210309	권칠승의원	2025.5.1.	
10		2211675	박성민의원	2025.7.23.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9.11.)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11.)에서 위 1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금형, 주조, 용접, 열처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수탁기업은 에너지 요금이 급등하는 경우 그 상승분을 온전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의지를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에 상생금융지수를 추가하여 신설하려는 것임.

그리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합리적 산정 등 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건수 증가에 대응하고 건설업 관련 분쟁조정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건설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추가하였음.

마지막으로, 수·위탁거래 조사에 대한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기타 법령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의 명확성과 법 체계상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함(안 제2조제12의2 및 제13호 등)

나.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1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14호)

다. 금융회사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함(안 제2조제10의2 등)

라.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

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의3제3항)

마. 거래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ㆍ위탁거래 조사에 대한 제척기간(3년)을 도입함(안 제27조의2)

바.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건설업 분야 위원을 추가함(안 제28조의6)

사. 현행법상 ‘제조’를 ‘제조등’으로 수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제4호 및 제27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조"라"를 ""제조등"이라"로,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물품등을 제조하는"을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조"를 "제조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제조에"를 "제조등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가격이"를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경비가"로 한다.

2의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바. 그 밖에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0의2. “상생금융지수”란 동반성장지수 중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및 중소기업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12의2. “주요 에너지경비”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 요금을 말한다.

제4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물품등을 제조하기”를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기”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동반성장지수의”를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의”로, “기업의”를 “기업·금융회사의”로 한다.

3.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제20조의4제2항 전단 중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정요건”을 “주요 에너지경비, 조정요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피하려는”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또는 납품대금이 각각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도록 기간 또는 납품대금을 나누어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행위
2.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
3.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2조의2제1항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를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조등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조하는”을 “제조등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제조된”을 “제조등이 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한다.

다.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행위

제27조제2항 단서 중 “제23조제1항에”를 “제45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조를”을 “제조등을”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제척기간) ① 제27조제1항·제4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개시 대상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수탁·위탁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분쟁조정을 요청하거나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수탁·위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 요청을 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용 검토를 위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가공위탁·수리위탁·기술개발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노무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무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용역위탁 중 역무공급 이외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공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수탁·위탁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수탁·위탁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제28조제3항 중 "검토하여"를 "검토 또는 조사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토 및"을 "검토, 조사 및"으로 한다.

제2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변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의"를 "변리사, 공인회계사, 건축

사 또는 기술사의”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제4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 · 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2호의2 · 제13호 및 제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탁기업이 수탁기업

과 물품등의 제조등 위탁에 관한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액 산정 관련 촉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정명령 등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27조제1항·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개시한 조사에 대한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시정명령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2의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바. 그 밖에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4. ----------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조등"이라----------제조등을----------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5. ~ 8의3. (생 략)	5. ~ 8의3. (현행과 같음)
9. "기술자료"란 물품등의 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9. ----------제조등----------.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상생금융지수"란 동반성장지수 중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상생협력 실적 및 중소기업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계량화한 지표를 말한다.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12. ----------제조등에----------.
<신 설>	12의2. “주요 에너지경비”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에 대한 요금으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에너지 요금을 말한다.
13. “납품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가격 또는 주요 에너지경비가----------.
제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제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수탁기업(수탁기업이 위탁받은 물품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2차 수탁기업을 포함한다)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①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기----------.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상생금융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 ⑥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금융지수의----------기업·금융회사의----------. ----------.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제3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 중소기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적합업종 합의	제20조의4(적합업종 합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외한다----------

도출을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업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적합업종 합의 도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6(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과 금융회사 간 상생금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금융지수 산정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① ----------제조등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4. ----------주요 에너지경비, 조정요건----------

는 사항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피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1. 동일한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또는 납품대금이 각각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도록 기간 또는 납품대금을 나누어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행위
<신 설>	2.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행위
<신 설>	3.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대금의 조정) ① --------제조등을--------.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품질보장 등) ① 수탁기업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술을 향상시켜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규격에 맞는 제품을 납품기일 이내에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보장 등) ① --------제조등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준수사항) ① ----------제조등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제	1의2. ---------제조등을----------불구하고 물품등의

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제조등에 대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같은 이유로 수탁기업에 추가비용이 드는데도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조등을----------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8. ----------제조등을 하는----------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10. ---------제조등을------------제조등이 된----------
11. ~ 13의2. (생 략)	11. ~ 13의2. (현행과 같음)
14. 수탁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	14. ----------

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가.·나. (생 략) <신 설>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하는 행위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조등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생 략)	제27조(수탁·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또는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사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1	② ----------. ----------

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1항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조등을----------.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제척기간) ① 제27조제1항·제4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조사개시 대상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수탁·위탁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분쟁조정을 요청하거나 제28조의9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수탁·위탁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 요청을 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용 검토를 위한 조사를 개시한 경우 분쟁 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척기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선요구 또는 시정권고·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가공위탁·수리위탁·기술개발위탁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노무 또는 기능을 제공하는 역무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용역위탁 중 역무공급 이외의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공사위탁의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수탁·위탁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수탁·위탁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 ② (생 략)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 권고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제3항에 따른 검토 및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분쟁의 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검토 또는 조사하여----------. ④ (현행과 같음) ⑤ ----------검토, 조사 및 ----------.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다. 1. ~ 3. (생 략) 4. 변호사, 변리사 또는 공인회	제28조의6(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30명----------. 1. ~ 3. (현행과 같음) 4. --------변리사, 공인회계사,

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자료의 제출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 ② (생 략)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